

● 제268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6. 6. 1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1215

I. 동의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제출자: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2016. 5. 30
- 다. 회부일: 2016. 6. 1

2. 제안이유

- 가.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상담·교육·문화 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남권지역의 외국인지원시설로,
- 나.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아 시행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시설명 :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로 129
- 시설규모 : 가산종합사회복지관 내 시설 이용(65m²)
- 이용대상 : 외국인근로자 등 이주민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2017. 1. 1.~ 2019.12.31.)
- 위탁업무
 -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관리·운영
 - 노무, 법률, 생활 등 상담
 - 한글·컴퓨터 교육 등, 의료지원
 - 문화체험 행사
- 소요예산 : 220,929천원(2016년 기준)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시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 3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최초위탁 : 2007.5.1~ 2007.12.31(8개월,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
- 2차 재계약 : 2008.1.1~ 2008.12.31(1년,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
- 3차 재계약 : 2009.1.1 ~ 2009.12.31(1년,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
- 4차 재계약 : 2010.1.1 ~ 2010.12.31(1년,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
- 5차 재계약 : 2011.1.1 ~ 2012.12.31(2년,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
- 6차 재계약 : 2013.1.1 ~ 2014.2.28.(1년 2월, 사회복지법인 하상복지회)
- 7차 수의계약 : 2014.3.1 ~ 2016.12.31.(2년 10월, 재단법인 도마니교수도회)

※ 1,2차 공개모집 결과, 단독응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수의계약

라.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의 필요성

-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상담·교육·취업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외국인 증가에 따른 지속적 서비스 및 프로그램 다양성을 지향하고, 보다 체계적 네트워크 형성과 효율적인 운영체제를 갖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제20조(업무의 위탁)

나. 예산조치 : 2017년 예산편성 요구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태호)

1.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추진해오던 ‘금천외국인근로자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가 금번으로 민간위탁 계약 연속 8회차를 맞이함에 따라,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¹⁾ 제2항의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 동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지속할 것인지(재위탁)에 대하여 서울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상기의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관리·운영 및 노무·법률·생활 등의 상담 서비스와 한글·컴퓨터 교육 및 의료지원 서비스 등 임

2.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개요

- 2007년 개소한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2)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외국인 지원시설의 하나로,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1조3)와 상기의 동 조례 제7조4)에 따라 서울시 재한외국인에 대한 사회적응에 필요한 각종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각종 서비스를 지원함.
- 동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은 순수 시비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5).

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7.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8. 외국인 근로자 권익 및 인권 보호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서울시외국인지원시설들 가운데 ‘외국인근로자센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불편·부당사항 해소로 권익보호 및 각종 프로그램 지원하기 위한 특화시설이라 할 수 있고, 현재 서울시에 아래 <표 1>과 같이, 동 센터를 포함하여 총 7개소의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운영 중에 있음.

<표1. 서울시 외국인근로자 센터 운영 현황>

센터명	위 치	규모	'16예산 (백만원)	인력	개관일	계약기간	비 고
성 동	성동구 무학로 6길 47-1	452㎡	297	5명	'01.12.14	2015.3.1. ~2016.12.31	서울시 단독시설
금 천	금천구 가산로 129	65㎡	220	4명	'07. 5. 1	2014.3.1. ~2016.12.31	가산사회 복지관 내
은 평	은평구 은평로 21길 14-26	37㎡	227	4명	'08. 3.13	2014.1.1. ~2016.12.31	녹번사회 복지관 내
강 동	강동구 성안로 13길 56	46㎡	246	4명	'08. 3.15	2014.1.1. ~2016.12.31	성내사회 복지관 내
성 북	성북구 오패산로 16길 23	23㎡	228	4명	'09. 4.30	2014.1.1. ~2016.12.31	월곡사회 복지관 내
양 천	양천구 신목로 16길 27	70㎡	235	4명	'09. 4.28	2014.1.1. ~2016.12.31	신목사회 복지관 내

3. 민간위탁대상사무 지속 여부에 대한 법적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 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할 것이 요청됨.

5) / 2006예산 기준 : 220,929천원

- 그런데,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려는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외국인근로자의 불편·부당 사항 해소 및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상담 등 대체로 비권력적이고 전문기술적인 사무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특별한 문제는 초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이는 현행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6)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기준이 적합한지와 동 조례 제6조7)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내용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해 볼 때도, 상기 ‘금천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7)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민간위탁 대상사무 지속 여부에 대한 정책적 검토

-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효율성 제고와 공급비용 절감 등 다양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휴먼서비스의 경우 그 특성상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 제고를 민간위탁의 일차적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임.
- 따라서, 상기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 전문성의 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한 이용자의 복지향상과 같은 질적 측면에서 효과가 뚜렷한지 여부가 핵심 요소라 할 것임.
- 동 위탁 사무는 서울시 재한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 노무·법률상담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사무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 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이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 이에 상기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짐.